

2026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보충자료 1

p. 23, 003-1 추가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 <25 서기보>

해설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1991. 12. 27.자 91마631). 답 X

p. 23, 003-2 추가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5 서기보>

해설 이전심급(前審)이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으로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 상고심에서 간접적으로 불복대상이 된 제1심판결 등도 포함된다. 다만 i) 환송이나 이송되기 전의 원심판결(단 이 경우는 제436조 3항에 의해 관여할 수 없다) ii) 재심소송에 있어서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대판 2000.08.18. 2000제다87) iii)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확정판결 iv) 본안소송에 관한 관계에서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재판(대결 1962.07.20. 61민재항3) v)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본안재판(대판 1969.11.04. 69그17) vi) 본안소송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대판 1991.12.27. 91마631) vii) 소송상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 등에 관여하는 것(대판 1969.12.09. 69다1232) 등은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다. 답 O

p. 25, 008 보충

최종지문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25 서기보> 답 O

p. 25, 009-1 추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 () <25 서기보>

해설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에서 소명방법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기피신청권을 악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법원이 당사자(기피신청인)가 제출한 소명방법만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사 기피신청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명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당부의 결정을 하여야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 수는 없다(대결 1988. 8. 10.자 88두9). 답 O

p. 39, 045 보충

최종지문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다. () [25 서기보] 답 O

p. 40, 046 보충

직중지문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 [25 서기보]

답 O

p. 44, 064 보충

직중지문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5 서기보]

답 X

p. 44, 073 보충

073-1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 [25 서기보]

해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③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답 O

073-2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25 서기보]

해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답 O

p. 47, 075 보충

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6 변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26 변시]

해설 소액단독사건은 소가 1원 ~ 3천만원이하, 중액단독사건은 소가 3천만원 초과 ~ 2억원이하, 고액단독사건은 2억원 초과 ~ 5억원이하 이다.

답 O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 [26 변시]

해설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관할에 영향이 없어 이송의 여지가 없다(대결 2011.07.14. 2011그65).

답 X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26 변시]

해설 소 제기 당시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하여 관할위반이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269조 2항 참고). **답** ○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26 변시]

해설 소액·중액단독사건은 항소심이 지방법원 항소부, 고액단독사건은 항소심이 고등법원이 된다(2022. 3. 1. 시행). **답** X

p. 48, 079 보충

직중지문 소송을 이송 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 () [25 서기보] **답** ○

p. 57, 020 보충

직중지문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부적법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 신청은 부적법하다. () [25 서기보]

해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01.29. 2014다34041). **답** ○

p. 58, 022 보충

직중지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 [25 서기보] **답** X

p. 59, 024 보충

직중지문 소송 계속 중 일방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 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25 서기보]

해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대결 199 8.05.30. 98㉔7). **답** ○

p. 59, 025 보충

직중지문 변론 종결 뒤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25 서기보] **답** ○

p. 65, 047 보충

직중지문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 [25 서기보] **답 X**

p. 70, 063 보충

직중지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 [25 서기보] **답 X**

p. 72, 069 보충

직중지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답 X**

p. 75, 079, 080 삭제

079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 [23 변시]

⇒ (O)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10. 11. 25. 2010타64877).

080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 (O) :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판 2021. 9. 15. 2020타297843).

p. 75, 078 보충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5 서기보]

해설 판례는 과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04.11. 99다23888).”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전합) 2025.10.23. 2021다252977).”라고 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답 X

p. 89, 032 보충, 032-1 추가

직중지문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원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25 서기보]

☞ (O)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32-1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 () [25 서기보]

직중지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법원은 채권자(본인)에게 그 보정 또는 추완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추후에 그 자를 대리인으로 허가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것이다. 또 그 허가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대리허가를 낸 사람에게 경매관계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대리를 허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67. 1. 18.자 66마1106 결정).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은 부적법한 것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민소법 제88조) 경매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출제자는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옳은 지문이다. 이 부분을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하려면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명확하게 출제를 하여야 한다.

답 X

p. 89, 033 보충

직중지문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25 서기보]

답 O

p. 92, 046 보충

유사지문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25 서기보]

☞ (△) :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출제자는 제93조의 제목이 개별대리의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어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공동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1)[대결 2011.9.29. 2011마1335 ;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8판, 220면, 박영사, 2019].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라는 표현은 예외적으로는 공동대리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개별대리가 되는 것은 민법상 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민법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2021년 서기보시험(【문14】 ④번 지문)도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조문 그대로 출제를 한 것이다. 문제 1번의 괄호에서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고 하였고, 대법원결정 2011.9.29. 2011마1335 은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공동대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지문은 틀린 표현이다. 옳은 표현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출제 오류이다.

p. 96, 060 보충

유사지문 원고 중증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가 원고 증증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후 원고 증증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A의 소송행위를 모두 승인하였다면, 그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B가 승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X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25 번시] ☞ 증증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승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가사 증증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승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판 1992. 9. 8. 92다18184). 답 O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의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결 2011.09.29. 2011마1335).

p. 140, 001-1, 001-2 신설

2.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

001-1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25 서기보]

☞ (O) :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실무제요 민사소송[I], 566면, 2017].

001-2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5 서기보]

☞ (O) :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곤란하여, 피용자의 급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를 의미한다[실무제요 민사소송[I], 565면, 2017].

p. 140, 002 보충

적중지문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25 서기보] **답 O**

p. 141, 003 보충

유사지문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자연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된다. ()
[25 서기보] : 소송비용을 전부 지출하게 되면 자기나 그 동거가족이 통상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력자나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국민자에 한하지 않는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여기의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답 X**

p. 143, 001 보충

유사지문 전소와 후소의 관별기준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 다. () [25 서기보] **답 O**

p. 144, 003 보충

유사지문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소송으로서 금지된다. () [25 서기보] **답 O**

p. 144, 004 보충

적중지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25 서기보] **답 X**

p. 148, 015 보충

적중지문 전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 [25 서기보] 답 O

p. 156, 039 해설 수정

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과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p. 183, 005 ~ 008 신설

005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 [25 서기보]

☞ (X) : 같은 심급의 같은 종류의 기일에 2회 내지 3회 불출석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1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 한다(대판 2006.10.27. 2004다69581).

006 재판장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25 서기보]

☞ (O) :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007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 [25 서기보]

☞ (O) :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③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008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25 서기보]

☞ (O) :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②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p. 199, 010 보충

적중지문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 [25 변시] **답 X**

p. 202, 019 보충

유사지문 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인 乙에게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주가 지난 경우, 甲이 위 송달 당시에 그 주소지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甲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후 제기된 甲의 상소 또는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25 변시] **답 O**

p. 203, 024 보충

유사지문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 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 [25 서기보] :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답 O**

p. 203, 026 보충

유사지문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25 서기보]

: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답 O**

적중지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 [25 서기보] :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답 X**

유사지문 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 () [25 변시] :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기일통지나 송달도 소송무능력자에게 하면 무효로 되며, 특히 판결정본의 경우 소송무능력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으나(강현중, 제424조 1항 4호, 제451조 1항 3호 참고), 소송무능력자 보호의 취지에서 볼 때 소송무능력자에게만 송달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면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시운, 제179조 참고). **답 O**

p. 202, 021 보충

유사지문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 [25 서기보]

: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답 O**

p. 207, 039 보충

유사지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甲과 乙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丙이 甲과 乙을 대신하여 동시에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위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송달은 무효이다.
() [25 변시] [답 O](#)

p. 209, 048 보충

유사지문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25 변시] [답 O](#)